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0
----------	-------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의자 : 민홍철 · 김두관 · 박상혁

박재호 · 이상현 · 임호선

장철민 · 전재수 · 최인호

한정애 · 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4호의2·10호의2 신설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제4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10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p> <p>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p>	<p>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 .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단서 삭제></p> <p><삭 제></p> <p><삭 제></p>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
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 ~ 4. (생략) <u><신설></u>	2. ~ 4. (현행과 같음) <u>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u>
5. ~ 10. (생략) <u><신설></u>	5.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u>
11. ~ 24. (생략) ② ~ ④ (생략)	11. ~ 2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